

2018년 주산지일관기계화(타작물 : 콩) 추진계획

I 목 적

-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타작물재배로부터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 구입으로 임대사업 활성화
- 농작업 기계화율 높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
- 장기임대를 통해 농가의 타작물 재배 효율성 상승과 경영비 절감

II 추진개요

- 사업주체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예 산 액 : 400백만원(국 200, 시 200)/2개소
- 사업대상 : 주산지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농가
- 사업내용 :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집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공급(장기임대)

III 물품 내역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파종·정식	파종기(콩)	4조	6	17,000	102,000	
	트랙터	34KW	4	31,250	125,000	
	소계	2 종	10		227,000	
수확	콤바인(콩)	2000mm	2	78,000	156,000	
	선별정선기	1250kg/h	1	17,000	17,000	
	소계	2 종	3		173,000	
소 계		4 종	13		400,000	

IV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구입 10월
- 장기임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10월
- 산학협동심의회 사업자 선정 10월
- 장기임대 사업대상자 사업설명 및 협의 10월
- 사업대상자 계약체결 및 임대실시 10월

V

장기 임대 방법

1. 장기임대 계약서 작성(안)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과-5439(2018. 08. 09.) : 첨부 1

2.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가의 35% 징수(권고안)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참조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산정

(별표 2)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88	70	58	50	44	39	35
2,000	175	140	117	100	88	78	70
3,000	263	210	175	150	131	117	105
4,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5,000	438	350	292	250	219	194	175
6,000	525	420	350	300	263	233	210
7,000	613	490	408	350	306	272	245
8,000	700	560	467	400	350	311	280
9,000	788	630	525	450	394	350	315

예시 1)

-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63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
- 5년 동안 총 3,150천원(630천원 × 5년 = 3,150)을 징수

3. 구입 기종별 내용연수 및 연간 임대료

구분	기종	구입가격 (천원)	내용 연수	연 임대료 (원)	총징수액 (원)
파종·정식	파종기 (콩)	17,000	5년	1,190,000	5,950,000
	트랙터	31,250	8년	1,367,188	10,937,500
수확	콤바인 (콩)	78,000	5년	5,460,000	27,300,000
	선별정선기	17,000	8년	743,750	5,950,000

[붙임1]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안)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20○○년 ○월 ○일 ~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 보관 시 임차인은 임차 농기계를 옥내에 보관하여 비, 눈 등 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해야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농기계운영실태점검 및 녹방지를 위해 사용 후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확실히 해야한다.

④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⑥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⑦ 임대기간 중 임대인은 반기 1회 농기계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임차 농업기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 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정읍시장 : 유 진 섭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 ○ ○ (인)

[붙임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붙임3]

농작업일지

기종 :

순번	날짜	작업내용	면적	확인	
				사용자	관리자